**시사 이슈 정리**

1.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9월 29일 기술이나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신규 ICO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ICO를 핑계로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내린 정부의 선제 조치.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처럼 신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규제에 대하여 ICO 관련 업계들이 반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규제조치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ICO와 관련해 업계 자율구제를 도입하거나 민관 공동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 정부와 ICO관리하는 공동기구를 설립하여 ICO를 실시하겠다는 곳을 등록시켜 공식적인 기술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한, 협회는 ICO로 모집한 돈을 제 3의 기구에 예탁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부당 인출 피해를 없애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
   1. 찬성  
      금융위가 ICO를 제재한 논리는 한 마디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예방하겠다는 것. 경제,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보편적인 룰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시각.  
      정부 규제 개입의 또 다른 근거는 과열 기미를 보이는 투기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공의 이익 위협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논리. 규제의 예방적 효과가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가상화폐 시장이 거대한 투기판으로 전락할 개연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도. 또한, 금융시장에 잠재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선의도 있음.
   2. 반대  
      시장 자율의 기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서 정부 규제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냄. 경제∙산업에서 혁명적 성과는 과거에도 일반인들이 이해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규제주의 입장.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가 경제에 과연 어떤 피해를 끼쳤으며, 지금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있느냐고 항변.  
      정보기술, 핀테크 등에서 비약적인 기술발전이나 4차 산업혁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로 급변하는 현대 경제의 질적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낡은 규제행정 시각으로는 첨단 금융 분야를 제대로 못 볼 수 있음. 현실적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블록체인’산업의 경쟁력을 정부가 깎아내릴 것이냐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금융에서 앞선 국가들이 대뜸 ‘규제’를 가하지 않는 점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음.
2. 파견근로자 고용  
   최근 정부가 국내 최대 제과 프렌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 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인력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파리바게뜨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뚜레쥬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정부는 한라그룹 계열 만도헬라일렉트로니스에서 일하는 파견 직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 조치도 내렸다.
   1. 찬성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고용시장의 약자로 보고 보호하기 위한 법. 실제 계약 주체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빠졌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게 고용부의 판단. 계약 명칭이나 형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  
      파리바게뜨 본사는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를 했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반복해왔다. ‘일정 수준’의 교육 훈련을 허용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셈.
   2. 반대  
      파견계약에 따라 제빵 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 사업주는 엄연히 가맹점(파리바게뜨 점포) 주인들이라는게 본사의 입장. 본사는 고용 관계에서 당사자가 아니며, 채용 승진 등에 대한 기준도 영세한 협력업체(파견횟)가 경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는 것.  
      가맹사업법 역시 제빵 기사에 대한 본사의 교육 훈련과 가맹점 경영 지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서 파견법이 너무 경직돼 있는데다, 그나마 법 운용까지 과도하게 했다. 법률 사이의 모순점을 업계가 일방적으로 안게 된 상황.  
      또한, 프랜차이즈업은 가맹 본사와 독립 사업자(일선 점포) 간 자유 계약에 따른 사업이 본질이라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다. 본사가 가맹점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면 통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업 자체가 무너진다는 논리. 게다가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본사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제빵 기사에게 요구한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3. 청소년 처벌 강화  
   얼마 전 ‘부산 여중생 또래 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강원 강릉 등지에서 제2의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폭로도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개정 주장이 나타났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흉악 범죄까지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청소년 범죄가 심해진다는 주장도 많다.
   1. 찬성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이라고 말해온 수준을 넘어선 잔혹한 폭력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계도와 교화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가정도 학교도 그 역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관적이다.  
      청소년 폭력에서 가해자의 나이만 볼 수는 없다. 몸이 망가지고 영혼까지 피폐해진 피해자들 실상을 직접 봐야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고의적이고 반복되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수사와 기소, 재판, 형 집행과정에서 미성년의 특성은 감안할 필요는 있다. 재활과 교화에서 청소년 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단순 절도, 단순 폭행 정도는 계도 위주로 가야겠지만 특수 상해, 조직 절도나 폭행, 잔혹 살인 같은 중범죄는 처벌 강화가 해법.
   2. 반대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분명 사회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청소년 범죄를 중범죄로 몰아가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정당한 길이 될 수 없다. 청소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크고, 학과 공부 위주로 쏠린 사회적 분위기도 감안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를 일반 성인 범죄와 구별하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도 보편적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주장은 다분히 감정적인 보복 행위에 가깝다. 처벌 강화로 사회적 격리만 해법이라고 한다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교육시킨다는 말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다. 처벌 강화보다 더 많은 살핌 제도, 즉각적인 대응, 학교 기능 부활에 주력해야 한다.